第289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8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4月29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책임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7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심사한 결과 이를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및 시장 질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이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아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수(文化享受) 기회증진 등 박물관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외국과의 교류 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1세기 변화된 문화환경에 맞게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창작물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 박물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국립박물관 공연장의 운영, 문화예술 창작품의 개발·보급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 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3조 신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우리 민족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04. 9. 23)로부터 6년간(2010. 9. 22까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의견과 6년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 제도의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명수 의원, 한선교 의원, 정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과몰입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게임이용내역을 제공하도록 하

였습니다.

둘째, 오픈마켓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율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운영방식이나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넷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업원 등이 법률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 등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입니다.

4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영 의원, 강승규 의원,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4건을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기업의 날 및 주간의 제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신설 등 중요한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은애 경원대학교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와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2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회적기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응답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기업 정의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벌칙조항의 추가와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안녕하십니까?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 및 테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법률 제정의 목적을 '경호안전'으로 축소하고 테러예방활동을 법률 제정의 목적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고, '테러'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서 테러와 관련된 자구를 삭제·조정하였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자유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회 및 시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였는바,

첫째,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이 이루어질 장소인 경호안전구역의 지정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집회는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줄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수정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건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임장관실의 직무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하면서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회한 경우라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와 징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재 국회규칙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여야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현실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

하는 경미한 조치만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 또는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현경병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2009년 12월 30일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것으로 폐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지난 1989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는 공무원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액 산정기준 그리고 보상금 지급시기(시행일부터 6월 이내 완료)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 등에 관련된 사무가 종료되었고, 시행일시도 경과되어 동법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법률폐지과정을 거치지 못해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돈을 줄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당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에서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경선후보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잔여재산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였고,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당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인에서 200인으로, 시·도당은 10인에서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